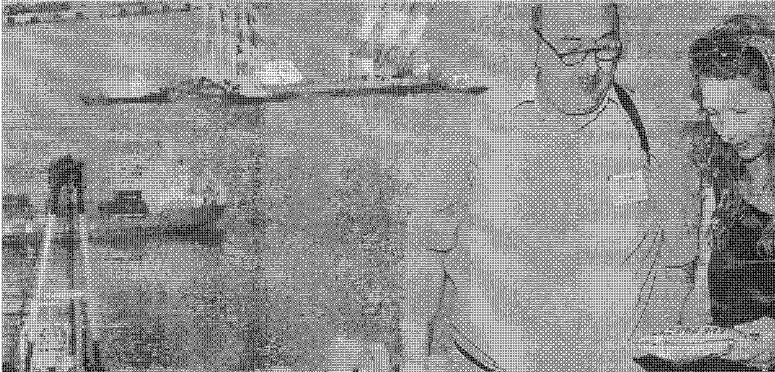


인삼과 지리적 표시제도의 밀월관계

-지리적 표시제도의 개요-



지리적 표시제도란 어떤 제품이 어느 곳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밝히는 제도로 단순히 제품의 생산지역을 표시하는 출처 표시와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하는 원산지표시 등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생산지나 제조지 등 상품의 원천을 표시하는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 제품의 생산지역을 표시하는 출처표시(indications of source)
 - 제품의 특질이 어느 특정한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의 명칭을 표시하는 원산지표시(appellations of origin)
- 100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이를 제도화시킨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체

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지리적 표시제의 취지는 국가나 특정지역 산업과 국민의 권리보호가 그 주된 목적이다.

◎ TRIPS 협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의 유형(분야)

- 저작권과 저작권접권(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 서비스상표를 포함한 상표(Trademarks, including service marks)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의장(Industrial designs)
- 특허(Patents)
- 집적화로 배치설계(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 영업 비밀을 포함한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 including trade secrets)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각국의 접근방향

17세기 이후 세계에서 자유무역이 성행됨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 오래된 자유무역경제를 가지고 있던 유럽은 자국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할 필요를 느낀 반면, 미국 같은 신흥무역국가는 이러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지리적 표시에 내재된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허위 지리적 표시로 인한 소비자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 '일반적인(generic) 명칭'이라는 구실 하에 지리적 표시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또한 미국이 지리적 표시를 단일 상품 내지 사업만 보호하는 상표권제도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해 오고 있다.

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상당히 변화되기는 했으나, WTO나 유럽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호는 아직도 시행

되지 않고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약(TRIPS) 이전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국제적 보호

가.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가장 오래된 협약의 하나로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파리협약 제10조에 상품의 재료, 생산자의 신분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거나 상품을 압수하도록 하고 있다.

1880년 파리협약 협상과정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허위표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제도를 거부, 가짜 상표명과 함께 사용하거나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표시를 할 경우에만 금지

1911년, 1925년과 1934년 회의에서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에만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협약의 개정까지에는 이 어지지 못하였다.

1958년 WIPO 의장이 “직·간접적으로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안을 제안, 채택이 되었다.

1958년에 파리협약 제10조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내용이 추가 “상품의 본성, 원산지, 제조과정, 특성

및 목적에의 적합성과 상품의 질 등에 대한 허위의 표시나 명명을 금지하는 안이 제안되었는데 미국이 물품의 원산지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여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채택되었다.

나. 마드리드 협약(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f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f Goods)

마드리드 협약은 31개국에 참여하여 1892년 7월 15일부터 발효되었는데 1958년 리스본에서 개정되었고 1967년 스톡홀름에서 일부조항이 추가되었다.

마드리드 협약은 허위나 오인을 유발하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 압수할 수 있도록 했고 포도주와 관련된 일반적인 명칭사용이 원산지 명칭사용과 상충되는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일반적인 명칭사용 문제로 인하여 미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 리스본 협약(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Registration)

리스본협약은 미국을 제외한 17개 파리협약 당사국들이 1958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1967년과 1979년에 개정됨.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제적 등록과 보호시스템을 정립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국가나 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이름으로서 상품이 그곳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과 상품의 질과 특성이 배타적이고 필수 불가결하게 자연적, 인적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인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정의하고 있다.

리스본협약은 원산지명칭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원산지 명칭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상표법과 배치되며 연방 식약청의 법규와도 배치되는 관계로 미국은 리스본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라.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지역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조약이다. 이 조약은 북미 3국간의 활발한 무역을 위해 각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임.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서 NAFTA는 협약국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지리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 보호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미국 의회는 이 NAFTA협정과 미국 상표법(Lanham Act) 제 1052조(e)가 상충된다는 판단 하에 자국 법을 개정하였다. ㉠